

의정부고산S3BL 공공분양주택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소유 및 재당첨제한 등 부적격당첨자는 해당기관의 추천여부, 신청접수 및 동호배정 여부와 무관하게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 되어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 금회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후분양 주택**으로 **2021년 5월 입주 예정**이며, 공정상 마이너스 옵션제 등을 실시하지 않고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 특별공급 추천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당첨예정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센터(apply.lh.or.kr)를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하여야 하고,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신청자격 적격심사를 위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미신청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불가
- ♠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apply.lh.or.kr)의 입주자모집공고문(2020.12월말 예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신청자가 동 안내문 내용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에 대하여 우리공사에서는 책임 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고, **제출기한을 반드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별도 기간연장 없음)**

공급개요 및 일정

- 공급위치 :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민락동, 산곡동 일원 의정부 고산 공공주택지구 내 S3블록
- 시 행 사 : 한국토지주택공사 (시공사 : 계룡건설)
- 공급호수 : 총 1,331호(공공분양)
- 분양가격 : 미정 [추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참조]
- 공급일정

| 구 분 | 일 자 | 참고사항 |
|------------|--------------------|---|
| • 입주자모집공고 | 2020. 12. 30. (예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확인 |
| • 인터넷 접수일자 | 2021. 01. 11. (예정) | 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에서 인터넷청약 |

※ 위 일정은 업무추진 중에 변동될 수 있으니 추후 LH 청약센터에 게시하는 “입주자모집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공급호수

| 주택형 (㎡) | 총 세대수 | 세부타입 | 세대수 | 세대별 계약면적(㎡) | | | | 공유 대지 면적 | 해당 동 | |
|------------|----------|------|-----|-------------|----------|-----------|-----------|----------------|---------|-------------------------|
| | | | | 주거 전용 | 주거 공용 | 그 밖의 공용면적 | | | | 계약 면적 (계) |
| | | | | | | 기타 공용 | 지하 주차장 | | | |
| 55A | 114 | 55A1 | 38 | 55.75 | 19.0019 | 3.4706 | 31.2358 | 109.4583 | 41.5370 | 308 |
| | | 55A2 | 76 | 55.94 | 19.0666 | 3.4825 | 31.3422 | 109.8313 | 41.6786 | 311, 313 |
| 59A | 751 | 59A1 | 175 | 59.51 | 20.2834 | 3.7048 | 33.3424 | 116.8406 | 44.3385 | 301, 306, 308 |
| | | 59A2 | 344 | 59.71 | 20.3516 | 3.7172 | 33.4545 | 117.2333 | 44.4875 | 302, 304, 305, 307 |
| | | 59A3 | 169 | 59.71 | 20.3516 | 3.7172 | 33.4545 | 117.2333 | 44.4875 | 309, 311, 313, 315 |
| | | 59A4 | 63 | 59.92 | 20.4232 | 3.7303 | 33.5722 | 117.6457 | 44.6440 | 303 |
| 59B | 205 | 59B1 | 55 | 59.73 | 20.3584 | 3.7185 | 33.4657 | 117.2726 | 44.5024 | 301, 306, 310, 312, 314 |
| | | 59B2 | 72 | 59.91 | 20.4198 | 3.7296 | 33.5666 | 117.6260 | 44.6365 | 302, 304, 305, 307 |
| | | 59B3 | 57 | 59.72 | 20.3550 | 3.7178 | 33.4601 | 117.2529 | 44.4949 | 311, 313, 315 |
| | | 59B4 | 21 | 59.75 | 20.3652 | 3.7197 | 33.4769 | 117.3118 | 44.5173 | 303 |
| 59C | 72 | 59C1 | 24 | 59.51 | 20.2834 | 3.7048 | 33.3424 | 116.8406 | 44.3385 | 310, 312, 314 |
| | | 59C2 | 48 | 59.84 | 20.3959 | 3.7253 | 33.5273 | 117.4885 | 44.5843 | 311, 313, 315 |
| 59D | 189 | 59D1 | 40 | 59.61 | 20.3175 | 3.7110 | 33.3985 | 117.0370 | 44.4130 | 301, 310, 312, 314 |
| | | 59D2 | 42 | 59.91 | 20.4198 | 3.7296 | 33.5666 | 117.6260 | 44.6365 | 305, 307 |
| | | 59D3 | 86 | 59.91 | 20.4198 | 3.7296 | 33.5666 | 117.6260 | 44.6365 | 311, 313, 315 |
| | | 59D4 | 21 | 59.95 | 20.4334 | 3.7322 | 33.5890 | 117.7046 | 44.6663 | 303 |

※ 주택형별로 접수 예정이며, 기관별 신청가능 주택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후분양 주택으로 전 세대 발코니 확장으로 시공됩니다.

II 공급자격

□ 기본요건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30(예정)) 기준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등]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무주택세대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35조제1항제27의2호에 해당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제외)으로서, 해당기관에서 정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우리공사에 추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공고일 기준 수도권 외 지역 거주시에도 수도권 거주자로 봄.

추천대상자

- (청약통장 불필요) 지자체 철거민, 장애인, 국가유공자,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 (청약통장 필요 - 가입 6개월 경과, 월납입 6회 이상) 북한이탈주민,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복무군인, 우수기능인, 중소기업근로자, 공무원, 의사상자, 다문화가족, 대한민국체육유공자

- 무주택세대구성원 판단기준

아래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다음 [주택 및 분양권등]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무주택자로 판단

[무주택세대구성원]

가.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주택공급신청자'라 함)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라.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주택 및 분양권등]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체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민법」 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거나, 자녀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 이 경우 자녀 및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2020.12월말(예정))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제외)이 아닌 분
- 과거 재당첨제한 적용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기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
- 과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 (과거 당첨일로부터 최대 1년)에 있는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상 1회 특별공급으로 공급받은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동 규칙 제55조의 예외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는 제외)

* 당첨 이후라도 자격검증 후 부적격자는 계약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III 당첨자 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LH청약센터(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인터넷 신청접수 (**특별공급 신청일에 청약신청 미접수 시 자동 포기처리**)
- 당첨자의 동·호 배정은 한국감정원의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하여 결정하며 **미신청, 미계약으로 잔여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예비대상자도 해당 신청일에 청약신청**을 하여야 예비대상자의 지위가 유지되며, 청약 미신청시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 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우리공사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하더라도 특별공급 미달 시 추가로 ‘당첨자’가 될 수 있는 분

□ 유의사항

-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예비대상자 포함)로 선정되었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신청일자에 LH청약센터([https:// apply.lh.or.kr](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청약신청을 하여야 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및 계약이 불가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수의 40% 이상을 예비입주자로 선정(선정 및 순번부여는 추첨으로 정함)하며, 당첨 취소·계약 미체결·해약이 있을 시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대로 공급기회를 제공합니다.
- 해당 기관의 예비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모든 특별공급(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포함)중 신청 미달된 유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다른 특별공급의 예비자로 선정된 분과 함께 추첨의 방식으로 입주자 선정 기회를 제공합니다. (단, 각 특별공급의 청약접수 결과 초과한 경우에는 신청한 예비대상자에게도 당첨 기회가 없습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당첨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청하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공급(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및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 당첨될 경우 2건 모두 계약체결 불가, 당첨자 명단 관리됩니다. 단, 예비대상자는 다른 일반공급에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신청은 무효가 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에 이미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 자격으로 기 당첨된 자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자는 **접수 불가하며 당첨자 명단 관리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등의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는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호 또는 1세대 소유 시에도 신청 가능)
- **당첨자 발표 이후라도 주택소유여부, 지역 거주요건, 재당첨제한 등의 자격요건에 대해 확인한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 해당 기관의 특별공급대상자 선정 및 추천, 동호배정 여부와 관련 없이 계약체결 불가하며, 당첨일로부터 1년간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신청한 주택형의 동·호수는 관련법령에 의거 주택형 내에서 층별·향별·타입별·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없이 전산관리업무 담당기관의 프로그램에 의해 추첨으로 결정합니다.(미신청·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변경불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에 한하여 1층 주택 우선배정을 신청할 수 있으나, 경쟁이 있을 경우 배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관련 세부사항, 임대조건, 공급일정, 유의사항 등은 LH 청약센터(apply.lh.or.kr)에 공고할 예정이오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가 위 사실들을 미숙지하고 신청하여 받는 불이익은 LH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해당 기관에서는 특히 ‘공급자격’ 및 ‘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를 충분히 안내, 재검증하여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1

단지배치도 및 단위세대 평면도

※ 본 자료는 2020.12.30. 입주자모집공고(예정)을 위해 준비 중인 자료로서 미확정상태이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변경될 수 있으니 확정된 단지조감도 및 평면도 등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공되는 팸플릿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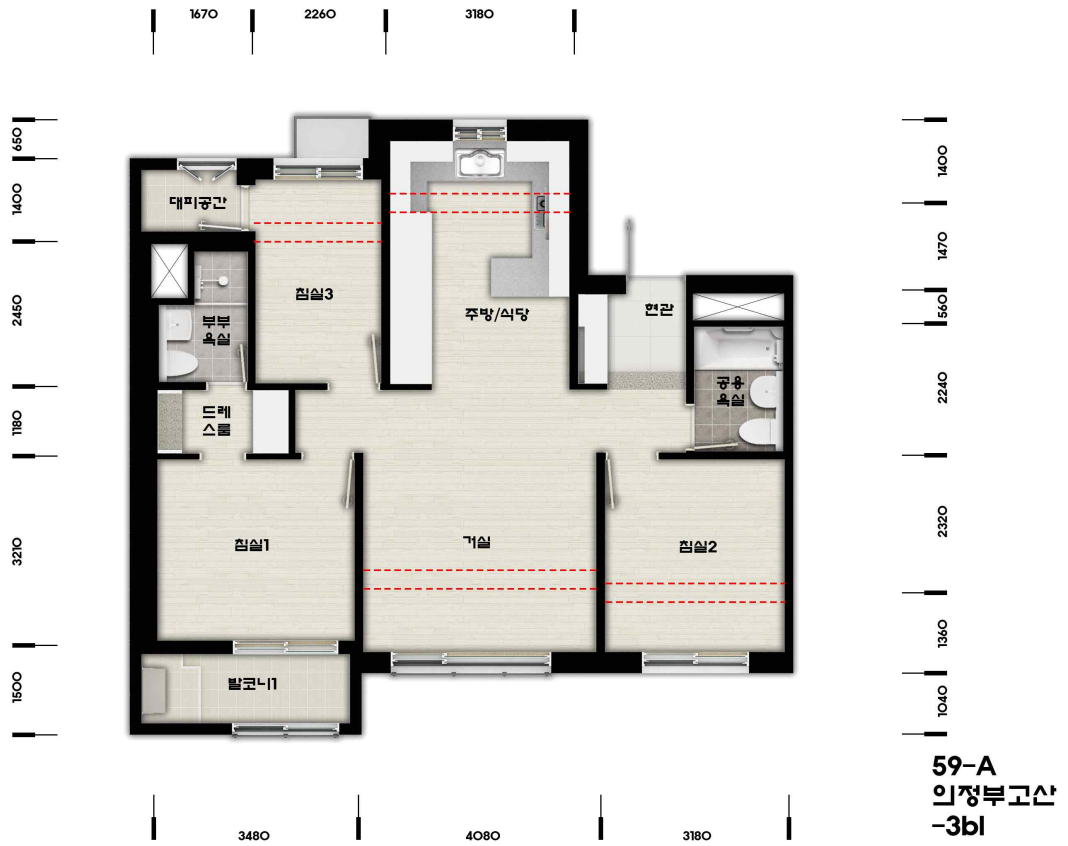
□ 단위세대 평면도

○ 55A (55A1, 55A2)



55-A
인정부고산
-3b

○ 59A (59A1, 59A2, 59A3, 59A4)



○ 59B (59B1, 59B2, 59B3, 59B4)

